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780호 2010. 9. 3.(금)

## 차 례

###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746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 폐지규칙 ----- 1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747호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 2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748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 ----- 4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980호 인천광역시서구아동위원위촉및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인천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범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0년 9월 3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746호

### 인천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범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 폐지규칙

인천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범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0년 9월 3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747호

### 인천광역시서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서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38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3제1항”을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로 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의 지급·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4항제2호 중 “행정 또는 세무·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자”를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로 한다.

제10조 다음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격려금 형태의 예산성과금 지급)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

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격려금 형태의 예산성과금 지급은 건당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 및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등에관한세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재정투·용자사업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0년 9월 3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748호

### 인천광역시서구재정투·용자사업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서구재정투·용자사업심사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인천광역시 서구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재정투·용자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투·용자사업 관련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에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 ②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고, 서기는 투자심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980호

인천광역시서구아동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08월 30 일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인천광역시서구아동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아동위원’과 ‘아동급식위원회’를 통합한 ‘아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급식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유명무실한 아동위원의 역할 강화 및 활성화를 기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제명 개정 :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위원회의 기능으로 확대 : 동별 개별 활동하는 아동위원과 아동급식위원회를 통합한 아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기능을 추가하고 아동급식사업에 활용(안 제2조,제3조,제6조 신설, 안 제4조,제5조 개정)
- 위원회 산하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아동급식 지원 기능을 강화(안 제7조 신설)

###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복지서비스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5731) 또는 Fax(560-4977)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서구아동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아동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3.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원조와 자문
4.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 및 선정
5. 급식의 방법 및 업체선정, 위생관리 등 급식전반에 관한 사항 심의
6. 그 밖의 아동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거나 관련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할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계공무원, 구의원, 학부모대표, 교육청,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음식업협회, 급식업체(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 ③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담당국장 및 아동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

를 수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활동미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위원이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방학기간 전 연 2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운영) 아동급식과 관련하여 필요시 위원회 산하에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아동급식지킴이
2. 급식아동후원회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사람,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

제9조(회의공개의 제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회의진행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의 아동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